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27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누72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재단법인 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○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, ○○○
피고, 항소인	○○○○시 ○○구청장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
	담당변호사 ○○○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2. 12. 2. 선고 2021구합85716 판결
변 론 종 결	2023. 8. 30.
판 결 선 고	2023. 10. 1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27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20. 9. 8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59,542,650원, 지방교육세 65,102,980원, 농어촌특별세 32,270,03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○○○

판사 ○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3-27

판사 ○○○